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19

제출일자 : 2003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개정사유

-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2003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고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,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국토이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「선계획 - 후개발」을 확립코자 함

2. 근거 법령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5조

3. 주요골자

-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 -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-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 - 15인이상 25인이내 위원장(부군수)
- 분과위원회 구성(안 제7조) - 5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정한사항을 심의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
2.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3.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4.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
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
1. 군의회 의원
2. 군의 공무원
3. 토지이용·건축·주택·교통·환경·방재·문화·농림·정보통신 등 도시 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

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
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9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청)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통지 및 회의록) ①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,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중 “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.

②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, 제26조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③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④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·3호중 “도시계획법 제14조의2”를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3항”으로 한다.